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3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2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- 청년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청년꿈터를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규정(안 제11조 신설)
 -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2조제1호, 제6조제4항, 제12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- 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금천청년꿈터를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11조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
 -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함.

사용료 ■ 수료의 의의

○ 의 의

- 수수료 : 주민이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부담하는 경비
- 사용료 :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
- * 넓은 의미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

○ 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4조 및 제156조

-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(제153조)
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(제154조)
-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(제156조)
- *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나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, 수수료 징수사무는 대표적인 자치사무
- * 규칙이나 훈령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수 없음
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